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안전정보처장 추가〉

■ 김 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8호, 제211550호)

2021.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 용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윤희숙 · 전주혜 ·
신원식 · 김형동 · 곽상도 · 유경준 · 김미애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6.
 - 3) 회 부 일 : 2021. 7. 19.
- ※ 의안번호 : 1154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6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 용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윤희숙 · 전주혜 ·
신원식 · 김형동 · 곽상도 · 유경준 · 김미애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6.
 - 3) 회 부 일 : 2021. 7. 19.
- ※ 의안번호 : 1155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국가안전정보처를 추가하고, 특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자질 및 직무적합성을 검증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국회법」 §37) ◦ 정보위원회의 소관(제16호)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 <추가> □ 다른 법률에 따른 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국회법」 §65②)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인사청문회법」 §6③) ◦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 <추가>	□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국회법 개정안」 §37) ◦ 정보위원회의 소관(제16호)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 <u>국가안전정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u> □ 다른 법률에 따른 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국회법 개정안」 §65②)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인사청문회법 개정안」 §6③) ◦ (좌 동) ◦ <u>국가안전정보처장</u>

현행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동의(17인) 및 국회 선출직(6인)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그 외의 직위(43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3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8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543)에 따르면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¹⁾.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안정정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2년의 임기를 지님²⁾).

상기 제정안은 경찰에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그 권한이 과다하므로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므로,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안전정보처가 신설될 경우 동 기관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016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제3조(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① 국가안전정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

②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조(처장)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둔다.

②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도입 시기	법적 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제17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제17대국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제17대국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제19대국회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에 따라 인사청문 근거 마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